

##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 발간 규정

<제정 2019.11.1.>

**제 1 조 (명칭)** 본 학술지는 ‘가족아동상담연구(Counseling for Families and Children Research)’라 칭한다.

**제 2 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상명대학교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(구, 상명가족아동상담교육센터)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 (발간횟수와 시기)** 본 학술지는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2월 28일로 정한다.

**제 4 조 (편집위원회)**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, 심사, 편집,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가족아동상담연구’ 편집위원회를 둔다.

**제 5 조 (편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)** 편집위원회는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에서 선정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5~10명의 편집위원,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**제 6 조 (심사위원단 구성)**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,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**제 7 조 (게재원칙)**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.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.

**제 8 조 (게재논문 종류)**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.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**제 9 조 (투고자격)**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담관련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. 단 석사학위자의 경우 지도교수나 상담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와 공동으로 투고할 수 있다.

**제 10 조 (투고방법)**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술지 게재 원고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
**제 11 조 (투고원고 심사)** 원고의 투고, 심사의뢰, 결과통보 등 투고부터 발간까지의 전 과정은 이메일(smcefc@smu.ac.kr) 교신으로 진행된다. 투고된 원고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진행된다.

## 상명가족아동상담연구소 발간 규정

**제 12 조 (기타)**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